

「구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	--

제출일자 : 2026. . .

제 출 자 : 문화환경위원회위원장

1. 수정이유

개정된 이용시간과 별표 2의 조기·야간 시간 구분이 상이하여 시설 이용 및 사용료 산정에 혼선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관련 기준을 일치시키고자 함.

2. 수정 주요내용

○ 안 별표 2 하단 체육시설 사용시간 문구 수정

현행	수정안
○ 체육시설의 사용료 산정을 위한 사용시간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조기(06:00~09:00), 주간(09:00~18:00), 야간(18:00~23:00) 각 1회를 적용한다. 다만, 필드(축구경기), 테니스장(실내만 해당), 구포동 생활체육공원(클레이코트, 축구장, 풋살장)의 경우 1회 사용시간은 2시간을 적용하고 구포동 생활체육공원의 야간 사용시간은 18:00~22:00으로 한다.	○ 체육시설의 사용료 산정을 위한 사용시간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조기(<u>05:00</u> ~09:00), 주간(09:00~18:00), 야간(18:00~ <u>22:00</u>) 각 1회를 적용한다. 다만, 필드(축구경기), 테니스장(실내만 해당), 구포동 생활체육공원(클레이코트, 축구장, 풋살장)의 경우 1회 사용시간은 2시간을 <u>적용한다</u> .

「구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구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 구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별표 2]

체육시설 전용사용료(제9조 관련)

구 분		평 일		토·일·공휴일	
		체육경기	체육경기 외	체육경기	체육경기 외
박정희 체육관	주경기장	100,000원	300,000원	150,000원	400,000원
	보조경기장	50,000원	100,000원	80,000원	200,000원
구미시복합 스포츠센터	다목적경기장	80,000원	200,000원	120,000원	300,000원
시민운동장 주경기장	트랙	60,000원	100,000원	90,000원	200,000원
	필드	150,000원	250,000원	250,000원	350,000원
	행사	600,000원		900,000원	
시민운동장 보조경기장	트랙	40,000원	80,000원	65,000원	160,000원
	필드	80,000원	160,000원	160,000원	240,000원
	행사	400,000원		500,000원	
복합 체육시설	인라인롤러경기장	무료	무료	무료	무료
	투포환장	무료	무료	무료	무료
	농구장	무료	무료	무료	무료
	다목적경기장	무료	무료	무료	무료
금오 테니스장	실외(1면 기준)	20,000원	30,000원	40,000원	50,000원
	실내(1면 기준)	15,000원	20,000원	20,000원	25,000원
구포동 생활체육 공원	클레이코트(1면 기준)	20,000원	30,000원	40,000원	50,000원
	축구장	주간	60,000원	80,000원	100,000원
		조기·야간	80,000원	120,000원	140,000원
	풋살장	주간	40,000원	50,000원	60,000원
		조기·야간	50,000원	60,000원	70,000원
고아시니어 스포츠파크	다목적구장, 게이트볼장	무료	무료	무료	무료
선산체육관	다목적구장	무료	무료	무료	무료
궁도장 (금오정)	대관료(1관, 4시간)	20,000원		30,000원	
신동생활 체육공원	축구장	무료	무료	무료	무료

- 체육시설의 사용료 산정을 위한 사용시간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조기(05:00 ~ 09:00), 주간(09:00 ~ 18:00), 야간(18:00 ~ 22:00) 각 1회를 적용한다.
 - 다만, 필드(축구경기), 테니스장(실내만 해당), 구포동 생활체육공원(클레이코트, 축구장, 풋살장)의 경우 1회 사용시간은 2시간을 적용한다.
 - 사용시간은 경기나 행사의 관련시설물 설치 등 준비하는 때부터 그 시설물의 철거 및 체육시설의 정리를 완료한 때까지로 본다.
 - 사용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가 종료된 경우에는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 다만, 우천 등으로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시민운동장 주경기장 또는 보조경기장의 사용인원수가 1,000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용료에 대하여 다음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행사 중 체육경기 외의 기준에만 적용한다.
- 1,000명 이상 ~ 2,000명 미만 : 사용료의 100분의 50 가산
 - 2,000명 이상 ~ 5,000명 미만 : 사용료의 100분의 100 가산
 - 5,000명 이상 : 사용료의 100분의 150 가산
- 박정희체육관 보조경기장의 사용료는 1면당 기준으로 한다.
- 복합체육시설의 농구장, 다목적경기장, 인라인롤러경기장은 개방시설로 별도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한다.